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 정 2001. 4.
 개 정 2012. 7.
 개 정 2017. 7.
 개 정 2020. 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 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취지에 따라 우송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의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8.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4. “가해자”란 성희롱·성폭력의 행위를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본교 양성평등성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고 한다)의 조사 등을 통하여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사실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08.25.)
5. “신고인”이란 성고충 민원의 발생을 상담실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08.25.)
6.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08.25.)
7.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개정 2020.08.25.)
8.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내용 혹은 사건 관련인의 신원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 축소 또는 사건의 조사를 지연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련 당사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0.08.25.)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의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② 제1항의 모든 구성원이라 함은 본교에 재직, 재학(휴직· 휴학 포함)중인 전임 또는 비전임 교원, 직원(일반직원, 기타 계약직 포함),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포함), 교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개정 2020.08.25.)
 ③ (삭제 2020.08.25.)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본교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본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08.25.)

제2장 양성평등성상담실

제5조(설치) 학생상담센터 내 양성평등성상담실을 둔다.(개정 2020.08.25.)

제6조(조직) 상담실장은 학생상담센터장이 되며, 고충상담원은 학생상담센터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08.25.)

제7조(업무) 상담실은 교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처리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자체추진계획 수립(개정 2020.08.25.)
2. 올바른 성 인식 확립을 위한 교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3. 교내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
4.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 접수, 조사, 처리 및 결과보고
5.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
6. 사이버신고센터 운영(개정 2020.08.25.)
7. 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피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개정 2020.08.25.)

제8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신설 2020.08.25.)① 본교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여가부 의무사항)

③ 본교의 장은 제7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예방교육)(신설 2020.08.25.) ① 상담실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신규 임용된 본교 구성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양

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1항1호)

제10조(관계기관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기관은 상담실의 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장 고충심의위원회

제11조(설치) 성희롱·성폭력 등의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위원장은 행정부총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상담실장과 고충상담원으로 두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전체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2명 이상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들로 위촉한다.(신설 2020.08.25.)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사안에 따라 3인 이내로 학생위원을 위촉하되 여학생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20.08.25.)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회의에서 제척된다.(신설 2020.08.2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성폭력의 사건의 예방과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신설 2020.08.25.)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판단(신설 2020.08.25.)
4. 성희롱·성폭력의 사건 조사와 처리, 공시에 관한 사항
5. 가해자의 징계요구, 경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피해자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7. 사건당사자에게 사건처리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개정 2020.08.25.)

제14조(징계의 요구) ① 위원회의 심의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각 호의 이행방법과 내용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서면사과(신설 2020.08.25.)
2.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와 접근 및 연락금지
3. 가해자에 대한 교내시설 및 서비스 이용 금지
4.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5. 가해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6. 그 밖의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신고된 내용, 인정된 내용, 처리결과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08.25.)

③ 상담실장은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개정 2020.08.25.)

- 제15조(징계)**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를 요청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징계에 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본교의 장은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본교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 중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규 2020.08.25.)

제4장 신고 및 처리절차

- 제16조(신고 및 접수)** ①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상담실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③ 1항의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신설 2020.08.25.)
- ④ 신고인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를 통보 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신설 2020.08.25.)
- ⑤ 상담실은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를 수령함으로써 사건을 접수한다.(신설 2020.08.25.)
- ⑥ 상담실장은 접수된 사건을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08.25.)
- ⑦ 상담실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조사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신설 2020.08.25.)
- ⑧ 상담실은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에 사건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및 사건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다.
- ⑨ 상담실은 피해자가 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조정을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다.
- ⑩ 상담실은 조정을 통해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개정 2020.08.25.)

제17조(신고의 각하)(신설 2020.08.25.) ① 상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16조 10항에 따라 종결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16조 3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4. 그밖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상담실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 ① 상담실의 조사는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08.25.)

②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과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08.25.)

- ③ 상담실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0.08.25.)
- ④ 상담실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가해자에게 통지함에 있어서 통지의 시기와 내용은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신설 2020.08.25.)
- ⑤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신설 2020.08.25.)
- ⑥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때에는 조사 중지사유와 중지기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가 중지된 경우에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신설 2020.08.25.)
- ⑦ 조사와 해결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신설 2020.08.25.)

제19조(조사방법)(신설 2020.08.25.) 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1. 당사자 또는 사건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당사자, 사건 관련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 당사자, 사건 관련자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5. 당사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음 또는 녹화
- 6. 기타 사건의 진실 발견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제20조(신고의 기각)(신설 2020.08.25.) ① 상담실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를 기각한다.

- 1.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조사 결과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상담실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조정)(신설 2020.08.25.) ① 상담실장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 ② 상담실장은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한다.

제22조(구제조치)(신설 2020.08.25.) ① 상담실장은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상담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상담실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재발방지 조치)(신설 2020.08.25.) ① 본교의 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② 본교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피해자 보호 및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2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본교의 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본교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담실장은 사건 발생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가해자와의 수업 및 업무 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20.08.25.)
- ③ 상담실장은 성희롱·성폭력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0.08.25.)
- ④ 상담실은 사건 처리를 위한 조사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0.08.25.)
- ⑤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신설 2020.08.25.) ① 당사자는 상담실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 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③ 당사자는 조사과정에서 고충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할 수 있다.
- ④ 당사자는 조사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되며,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⑤ 당사자 및 관련자는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⑥ 제19조 1항 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